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10.20.(수) 10:00

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
[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]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3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1.10. 7.

2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기본이념 및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~제5조)
- 다.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(안 제6조~제11조)
- 라.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12조)
- 마.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7조)
- 바. 문화도시사업의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~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기본법」 제5조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구청장이 발의하였음.
- 문화기본법 제5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함.
- 이에 우리구는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를 수행할 전문기구로써 지난 2017년 금천문화재단을 서울시에서 14번째로 설립하였으며, 2020년에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 선포¹⁾를 통해 금천구문화정책 중장기계획(2020 ~ 2023)을 수립하여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음.

나. 주요내용

1) 금천미래문화도시 선포식 : 2020.10.15.

-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에 다양한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문화적 다양성과 안 제9조의 지역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통한 문화도시 환경 조성, 안 제10조의 문화관광 개발 및 안 제11조의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원을 강조하였음
- 안 제12조에 문화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도시위원회의 정책 자문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.

다. 검토결과

- 2011년에 제정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추구하였다면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음
- 특히 문화도시와 문화권,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

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
생활문화 활성화는 현재의 문화동향에 발 맞춰 갈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음

- 이에 미래문화도시를 추구하는 구의 비전과 부합되기에 조례 제정에 의미를 두고 구와 금천문화재단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구 주민의 문화적 삶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 「서울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

문화기본법

[시행 2021. 9. 11.] [법률 제18379호, 2021. 8. 10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한 재원(財源)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,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,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문화영향평가”라 한다)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역문화진흥법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8165호, 2021. 5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